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43

발의연월일: 2020. 9. 18.

발 의 자: 박완주·서영교·김병기

전해철 • 인재근 • 오영환

김교흥 · 김영배 · 송영길

김민철 · 신정훈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현수막 게시,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등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되,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의료시설·종교시설·문화시설의 당초 설치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나, 종교시설·극장 등이 공간 대관으로 당초 설치 목적과 달리 이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시설의 이용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예비후보자의 특정 시설 내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이에 병원·종교시설·극장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예비후보자가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행위를 할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제한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시청이나 구청사 등의 다중이 이용하는 관공서의 경우 호별방문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60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06조제2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중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을 "병원·종교시설·극장(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옥내"로 한다.

제106조제2항 중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을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을 "도로·시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가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
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운동) 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	
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	2
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	
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	
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	
호에서 같다) ·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	
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	
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	
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	
열차 • 전동차 •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	<u>병원</u>
구 안, <u>병원·종교시설·극장</u>	·종교시설·극장(대관 등으
<u>의 안</u> 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	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하다.	제외한다)의 옥내

- 3. ~ 6. (생 략)
- ② ~ ⑥ (생 략)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 ① (생 략)
-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반·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 ③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u>도로・시장・점포・다방</u>
<u>• 대합실 • 관공서</u>

③ (현행과 같음)